



제314회 임시회
2012. 9. 11.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8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2년 9월 4일

3. 제안이유

- 아동·여성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른 아동·여성보호 안전망 구축 기반마련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·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설치·운영

4. 주요내용

-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설치(안 제4조)
- 협의회의 구성(안 제5조)
 - 위원장(당연직 : 행정부지사) 포함 20명 이내
- 협의회의 기능(안 제7조)
-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 제정의 동기 및 필요성

- 동 조례안은 '12. 3. 2. 여성가족부로부터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 평가계획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,
-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도지사의 책무(행·재정적 조치, 시책추진, 정보제공 등)를 규정하고,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추진과 지역사회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아동·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'12. 3. 2. 여성가족부로부터 「아동·여성보호 지역연대」 평가계획 및 표준조례안이 통보 되었는데 조례제정이 통보후 6개월이나 지체된 사유와 제5조 협의회의 구성시 여성정책관이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【참고자료】

<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사례>

<광역자치단체 : 6개 시도>

시 도	조 례 명	제정일
경 북	경상북도 아동·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	2010.1.11
광주시	광주광역시 아동·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	2010.2.15
울산시	울산광역시 아동·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10.1.7
경 남	경상남도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	2010.5.6
부 산	부산광역시 여성·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	2010.4.28
제주도	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	2011.10.12